

[일련번호 : 27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공사 준공검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동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에 따라 공사 준공처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검사)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, 설계서,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,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(검사)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)에 따라 공사, 용역의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준공검사조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작성하고, 이때 검사(검수) 공무원의 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▣▣▣▣동은 20**.*.*. ‘▣▣▣▣동주민센터 ***(*)층) **** 및 **** 설치공사’ 건으로 8,800,000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이행 완료 사실에 대한 검사 후 준공검사(수)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, 준공검사 없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준공서류 소홀 내역

연번	준공일시	건명	금액	지적사항
1	20**.*.*.	▣▣▣▣동주민센터 ***(*)층) **** 및 **** 설치공사	8,800천원	- 준공검사(수)조서 미작성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▣▣▣▣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▣▣▣▣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공사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의)